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 상품요약서

[제작일자: 2025.04.01]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입니까?

A: 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은 고액치료비관련 암,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및 소액암을 하나로 종합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암을 보장해주는 실속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보장금액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보장체증형으로 구성되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 보험상품입니다.

Q: 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의 보험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A: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Q: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고액치료비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① 보험의 종류

- 실속형, 보장체증형

②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10 년만기	전기납	만 15 세~70 세
	20 년만기	10·15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30 년만기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1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시소성	80 세만기	15 년납	만 15 세~65 세
실속형		20 년납	만 15 세~60 세
		30 년납	만 15 세~50 세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90 세만기	30 년납	만 15 세~60 세
	100 세만기	10·15·20·3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20 년만기	10·15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30 년만기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80 세만기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60 세
보장체증형		30 년납	만 15 세~50 세
	90 세만기 ㅡ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30 년납	만 15 세~60 세
	100 세만기	10·15·20·3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③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④ 가입한도 및 건강진단

- 가입한도

주계약 가입금액

실속형: 최저 500 만원 ~ 최고 2,000 만원 보장체증형: 최저 500 만원 ~ 최고 1,500 만원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내용 또는 가입경로 등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여부 한도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가입상황, 나이 및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상품의 구성

주계약	선택특약
무배당수호천사	+ 방사선항암약물치료특약A2
NEW 실속하나로암보험	+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A2
	+ 암통원특약A2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단체취급특약
	+ 보험료납입유예특약
	+ 자동갱신운영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별조건부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

1. 실속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고액치료비관련	암: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	글수암 등 약곤	에서 정한 질환	
		계약일로	고액치료비관련 암	: 5,000 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부터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 년이상		: 1,000 만원
암진단비	고액치료비관련 암 또는 고액		고액치료비관련 암	: 2,500 만원
	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으로	계약일로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 500 만원
	진단확정 되었을 때	부터	(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각각 최초 1 회한)	1 년미만	180일 경과 이전에 진	!단확정시에는
			100 만원 지	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기타피부암으로	계약일로브	부터 1 년이상	: 200 만원
진단비	진단확정 되었을 때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 100		: 100 만원
	(최초 1 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갑상선암으로	계약일로브	부터 1 년이상	: 200 만원
진단비	진단확정 되었을 때	계약일로브	부터 1 년미만	: 100 만원
	(최초 1 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제자리암으로	계약일로박	부터 1 년이상	: 200 만원
진단비	진단확정 되었을 때	계약일로박	부터 1 년미만	: 100 만원
	(최초 1 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경계성종양으로	계약일로브	부터 1 년이상	: 200 만원
진단비	진단확정 되었을 때	계약일로박	부터 1 년미만	: 100 만원
	(최초 1 회한)			

주)

- 1.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고액치료비관 련 암" 포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고액치료비관련 암" 포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4. 약관 제 3 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각 지급하고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5. 약관 제 3 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 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6.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여 약관 제 3 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유방암"이라 합니다.

2. 보장체증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액치료비관련	암: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	-암 등 약관0	세서 정한 질환
		제 1	계약일로 부터 1 년 이상	고액치료비관련 암 : 5,000 만원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 1,000 만원
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관련 암 또는 고 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으 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 회한)	보 험 기 간	계약일로 부터 1 년 미만	고액치료비관련 암 : 2,500 만원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 500 만원 (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에는 100 만원 지급)
		제	2 보험기간	고액치료비관련 암 : 1 억원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 2,000 만원
기타피부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1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 년이상 :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 100 만원
진단비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제 2 보험기간		400 만원
갑상선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제	1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 년이상 :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 100 만원
진단비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제	2 보험기간	400 만원
제자리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제자리암제자리암으로진단비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1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 년이상 :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 100 만원
진단비			2 보험기간	400 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제	1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 년이상 :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 100 만원
	전계성용당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2 보험기간	400 만원

주)

- 1.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고액치료비관 련 암" 포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고액치료비관련 암" 포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4. 약관 제 3 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각 지급하고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5. 약관 제 3 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 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6.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여 약관 제 3 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유방암"이라 합니다.
- 7. "제 1 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 2 보험기간"이라 함은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만기까지를 말합니다.

■ 무배당방사선항암약물치료특약A2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항암방사선 치료비	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	암 100만원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20만원
항암약물 지료비	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	암 100만원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20만원

주)

1. 약관 제2-1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4. 약관 제2-1조의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6.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둘 중 최초 1 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 하는 "항암방사선치료비" 또는 "항암약물치료비"가 지급된 경우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항암 방사선치료비" 또는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 A2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 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이상	특약보험가입금액	
암진단비	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주)

- 1. 약관 제 2-1 조의 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5. 약관 제 2-1 조의 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4 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 6. "유방암"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 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합니다.

■ 무배당암통원특약 A2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 직접치료 통원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 회당)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만원 1 만원 1 만원 1 만원 1 만원

주)

- 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 약관 제 2-1 조의 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약관 제 2-1 조의 3("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4 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배당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특정면역항암약물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 년이상	특약보험가입금액
허가치료보험금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 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 회한)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특약보험가입금액 의 50%

주)

-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3.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4.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 2-1 조의 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 3 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5.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 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 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 년이상	특약보험가입금액
허가치료보험금	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 회한)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주)

-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 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관 제 2-1 조의 4("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 3 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는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5.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 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해약환급금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해약환급금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해약환급금 지급
 -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2년이내)

: 해약환급금 지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사항 지급제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 장개시일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수호천사NEW실속하나로암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3.0% 입니다.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는 이율은 연복리 3.0%(다만, 갱신형 등 일부 특약은 2.25%)입니다.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입니까?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20 세	40 세	60 세
거칭아바새ㄹ	남자	0.000333	0.002792	0.010529
경험암발생률	여자	0.000558	0.006073	0.008577
갑상선암	남자	0.165905	0.308741	0.057294
발생비율	여자	0.494497	0.395011	0.208988
고액치료비관련	남자	0.441328	0.106180	0.053763
암발생비율	여자	0.185011	0.036666	0.051786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Q: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 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총괄배당과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무배당수호천사NEW실속하나로암보험은 무배당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 해약환급금 예시

실속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2,000 만원, 남자 40 세, 80 세만기, 20 년납, 월납, 단위: 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 개월	11	0	0.0%
6 개월	23	0	0.0%
9 개월	35	0	0.0%
1 년	47	0	0.0%
2 년	94	17	18.9%
3 년	141	54	38.3%
5 년	236	128	54.5%
10 년	472	300	63.5%
15 년	709	464	65.5%
20 년	945	621	65.7%
30 년	945	483	51.1%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40 년	945	0	0.0%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시이며, 중도에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변경(감소)됩니다.

② 보장체증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500 만원, 남자 40 세, 80 세만기, 20 년납, 월납, 단위: 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3 개월	16	0	0.0%	
6 개월	32	0	0.0%	
9 개월	48	0	0.0%	
1 년	64	0	0.0%	
2 년	128	29	23.3%	
3 년	192	85	44.3%	
5 년	321	200	62.3%	
10 년	642	472	73.6%	
15 년	963	702	72.9%	
20 년	1,285	920	71.6%	
30 년	1,285	718	55.9%	
40 년	1,285	0	0.0%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시이며, 중도에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변경(감소)됩니다.

6.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40세]

구분	상품명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가격 수	가입금액 (만원)
주계약 -	(무)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_ 실속형(주피남자)	40	20	남자	103.1%	- 2,000
	(무)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_ 실속형(주피여자)	40	20	여자	106.4%	
	(무)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_ 보장체증형(주피남자)	40	20	남자	99.2%	1 500
	(무)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_ 보장체증형(주피여자)	40	20	여자	102.2%	1,500

7. 보장범위지수

보장범위지수란?

보장범위지수는 보험상품(보장성보험)의 보장수준 비교를 위한 보장수준 비교지수입니다.

- ▶ 해당상품의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표준상품의 위험보험료 총액* 으로 나눈 비율을 "보장범위지수"라고 합니다.
 -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 상품의 위험보험료
- ※ 회사별/상품별 비교·공시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상품비교·공시실" 참조

[기준: 40세, 10년만기, 전기납]

구	분	보장범위지수(%)
암진단	남 자	140.9
	여 자	113.6

- 주1) 가입조건 : 보장범위지수(삭감기간 : 1년), 일반암진단금 1,000만원, 소액암진단금 200만원, 고액암진단금 5,000만원
- 주2) 가입 시 주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보장범위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보장범위지수는 상기 가입조건에 따른 보장수준을 나타내므로, 보장수준이 높아질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